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5. 4. 24

나. 회부일자 : '95. 4. 24

3. 제안이유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4. 주요골자

- 심의위원회 구성범위 및 위원의 임기
- 위원회 기능 (심의사항)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의 수당지급등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우리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 바, 이에 민간자본유치의 촉진을 유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구성에 있어서는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했으며
- 위원으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둘째, 기능에 있어서는

-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기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셋째, 회의에 있어서는

-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였음.

넷째, 수당 및 여비에 있어서는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제정 조례안은 승인하여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부 록

-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